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97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김승수 · 김은혜 · 이준석
이종욱 · 안철수 · 조은희
권영세 · 안상훈 · 윤한홍
이종배 · 임종득 · 박수영
이소희 · 조승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

10의3.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⑦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의2.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u> <u>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u> <u>사자문 지원</u>
<u><신 설></u>	<u>10의3.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u> <u>통역 · 번역 및 감수 지원</u>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